

# 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 연수사업 과 업 설 명 서

2016. 4. 15

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
# 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해외 연수사업 과업설명서

## 1. 사업경비

- 일정에 따라 항공료, 여행자 보험료, 숙박비, 식비, 현지교통비, 관광입장료, 봉사료, 알선수수료 및 각종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.

## 2. 숙박시설

- 호텔은 1급 이상으로 하며 침실배정은 2인 1실로 한다.

## 3. 식사 등

-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편성하여 급식토록 한다.

## 4. 교 통

- 연수기간 중 차량은 25인승 이상으로 냉·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.
- 인솔 안내원은 반드시 1명 이상 동승 시켜야 한다.
- 교통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(세금, 통행료, 주차료, 봉사료 등)는 여행사가 부담한다.

## 5. 출입국 수속

-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협의회와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.

## 6. 여행자 보험 가입

-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.(보상금액 1억원 기준)
-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.

## 7. 사업의 시작과 종료

- 연수사업 참가일행이 제주국제공항에 집결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되며,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,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탐방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.

## 8. 연수사업일정 수행 및 변경

- 연수사업일정은 세부일정을 작성한 후,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우리 협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계약체결 후 연수사업 시작 2일전까지 방문지역별 숙소 확보,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회의에 제출한다.
- 우리 협회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사업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9. 안내원 동행

- 출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, 탐방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와 한국어 및 해당국가의 언어구사에 능통해야 하며 해당분야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.

## 10. 탐방 참가인원

- 참가인원은 17명 기준으로 하되, 참가인원 변경시의 경비지급은 1인당 금액을 산출하여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연수금액을 조정한다.

## 11. 사고자 처리

-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우리 협회회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연수기간 중 발생한 각종사고나 질병으로 탐방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.

## 12. 연수사업 경비의 지급 및 집행과 정산

- 연수사업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증빙서에 의하여 가감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연수사업에 대한 대금은 계약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우리 협의회의 확인을 거쳐 여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입금 지정계좌로 지급한다.

## 13. 구급약품의 휴대

- 여행사는 연수사업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.

## 14. 책 임

- 기타 연수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, 무성의, 태만,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·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.

## 15. 기 타

- 연수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해외연수 안내 및 숙박, 식사제공,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상기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협의회 의견에 따른다.